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청년인턴 모집 공고

충청남도의회에서 도내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직무경험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인턴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17.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담당 업무
충청남도의회 (부서별 배치)	2명 ※성별무관	
의사담당관	1	- 의안 전산 등록 등 보조 - 본회의 진행 지원 -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등 업무 지원
입법정책담당관	1	- 입법평가 업무 지원 - 자치법규 현황 및 입법평가 관련 데이터 수집 정리 -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원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근무예정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1개 부서만 지원 가능 (복수 지원 불가)

※담당업무 관련 문의 (의사 041-635-5111, 입법 041-635-5128)

2. 근무조건 등

○ 근로형태 : 공공분야 체험형 인턴십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이 아님)

○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4. 5. 20. ~ '24. 11. 30.

※합격자 검증, 재공고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 :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근무예정부서별 근무

○ 근무조건

- 보수 : 월 2,403,500원

[보수 세부내역]

*기본급(월) : 2,060,740원

*약정수당(월) : 교통보조 50,000원 정액급식 140,000원 상여수당 70,000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82,760원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원천징수 전 금액임

- 복리후생

*4대 보험(산재·건강·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급 휴가(연차 : 1개월 개근 시 월 1일 부여)

*명절휴가비 지원(200,000원) ※지급기준일(명절)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지급

*30일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

○ 기타사항

- 도 의회 각 부서 실무 배치로 공공부문 근무경험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휴일 및 시간외근무는 일과 전·후를 취업 준비에 활용토록 원칙적 제한함
- 이외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및 「충청남도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의함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청년(19~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예정부서별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2005. 4. 17. 이전 ~ 1984. 4. 18.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근무예정부서	자격요건(필수) ※근무예정부서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
의사담당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입법정책담당관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중 1개 분야 전공자(재학 포함)

※자격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근로계약 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우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우대함

	우대요건(가점)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해당 자격은 면접심사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원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공무원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충청남도 공무원직 운영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4. 채용일정 · 방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17.(수)	2024. 4. 17.(수) ~ 4. 29.(월) 18시	2024. 5. 1.(수) (예정)	2024. 5. 9.(목) (예정)	2024. 5. 14.(화) (예정)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https://council.chungnam.go.kr/>)에 공지 예정

※서류전형, 면접심사 방법은 충청남도의회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구비 여부, 증빙서류 유효 여부, 자기소개서, 기타 응시자격 요건 등 직무수행 관련 요건 심사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분야(근무예정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만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일자 : '24. 5. 1.(수) (예정)

*방법 : 충청남도의회 누리집(<https://council.chungnam.go.kr/>)에 공고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 의회소식 > 공지사항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면접심사 평정요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결원 발생 시 면접심사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만 사용 가능	비고
1	■ 응시원서 1부	모든 응시자 제출
2	■ 이력서 1부	
3	■ 자기소개서 1부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 사회형평가점(장애인 등) 해당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7	■ 자격증 사본 1부	
8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전공분야 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9	■ 재직·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 불가	

○ 제출기간

- 2024. 4. 17.(수) ~ 4. 29.(월) 18:00
- 2024. 4. 29.(월) 18:00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접수, 서류전형 실시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zerar321@korea.kr)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붙임 예시와 같이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 청년인턴지원 근무예정(지원)부서_성명.PDF (예 : 청년인턴지원 의사담당관 홍길동.PDF)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및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의 거짓작성 또는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 면접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의 채용 기간은 최종합격자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의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 계약의 종료)〉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041-635-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